

#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 1. 개정이유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방파제 축조공사」 관련 해상교통 안전진단 시 수립된 안전대책을 이행하여 안전한 해상공사를 추진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방파제 축조공사로 인한 안전 통항을 위해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전면 해역 운항 항법 개정(안 제8조, 별표 6)
- 나. 방파제 축조공사로 인한 변경된 정박지 위치 반영(별표 1)
- 다. 경도(E) 오폭기 수정(안 13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등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고시안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호나목 중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부두 끝단과 평행하게 100m”를 “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부두, 방파제, 연안여객부두 등의 시설물로부터 100미터”로, “200m”를 “200미터”로 하고, 같은 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때, 정박지에 묘박한 선박을 주의하여 항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나목 중 “12903-59.52)”를 “129-03-59.52)”로 한다.

제19조 중 “2025년 1월 1일”을 “2026년 1월 1일”로 한다.

#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과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부산항 수상구역과 수상구역 밖의 정박지, 항로, 항법, 속력 제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 운항 안전 확보와 해상교통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규칙은 「항만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설정된 부산항과 이 규칙에 따라 설정된 항로, 정박지(이하 “부산항”이라 한다)를 입출항하는 모든 선박에 적용한다.

## 제2장 정박지와 항로

**제3조(정박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정박지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정박금지구역)** 「선박입출항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정박 금지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항로)** 「선박입출항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부산항 항로는 별표 3과 같고,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덕수도(입출항항로)는 별표 4와 같다.

**제6조(수리 장소)** ① 「선박입출항법」 제37조에 따라 선박 수리를 위하여 지정한 장소는 별표 1 정박지 중 “N-5” 정박지를 말한다.

②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기상, 선박 크기, 해상 조건 등을 이유로 제1항에 따른 장소에서 선박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그 외의 장소에서 수리하도록 할 수 있다.

## 제3장 항법

**제7조(부산항 전체 항법)** 부산항 항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항 내에서 운항하는 관제대상선박은 선박교통관제관서의 선박교통 관제에 따라야 한다.
2. 시계(視界) 제한이 있을 때 모든 선박은 다른 선박의 운항에 위험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안전한 속력으로 운항해야 한다.
3. 태풍 또는 기상특보(강풍, 풍랑) 발효에 대응하여 부산항 선박대피협의 회(비대면 회의 포함)의 피항 명령이 있으면 해당 선박은 안전한 수역으로 대피해야 한다.

**제8조(북항 항법)** 북항을 입출항하는 모든 선박은 다음 항법에 따라 운항해야 한다.

1. 부산대교 하단 협소한 수로를 운항하는 모든 선박은 수로 중앙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운항해야 하며, 선박을 정지하거나 수로를 횡단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2. 5부두 물양장, 시민부두를 출입하는 「선박입출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우선피항선은 북항 내항방파제 안쪽 구역에서 입항 또는 출항하거나 이동하는 여객선과 화물선 등의 진로를 피하여 운항해야 한다.
3. 오류도 방파제 또는 조도 방파제 인근 수로를 운항하고자 하는 선박의 선장은 기상, 화물 적재 상태, 선박 톤수·전장·폭·높이, 항세(항만의 상황), 수심 등을 고려해야 하고, 사전에 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이를 알려야 한다. 다만, 「선박입출항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위험물을 적재한 선박은 운항을 제한한다.
4. 부산항대교 아래에서 해수면 기준 높이 60m 이하(크루즈선은 높이 63m

이하) 선박만 운항 가능하며, 부산항대교를 운항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풍속, 파고, 조류 등 기상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운항해야 한다. 크루즈선이 부산항대교 아래를 운항할 경우 항로 중앙부를 중심으로 좌우 100m 이내로 통과해야 하며, 다른 선박과 교차하여 운항할 수 없다.

5. 부산대교 또는 영도대교 아래를 통과하는 예·부선은 1척(부선 포함)만 예인할 수 있으며, 선박을 결속(結束)하여 운항해야 한다.

6.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전면 해역을 운항하는 모든 선박은 가능하면 기준점(N 35-06.75, E 129-03.5)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운항할 수 있도록 한다(별표 6 참조). 다만, 가목 이외에는 권고사항으로 한다.

가.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 전면 해역을 운항하는 모든 선박은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로 입출항하는 여객선과 화물선이 우선 입출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5부두 물양장과 제4항로를 운항하고자 하는 선박은 가능한 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부두, 방파제, 연안여객부두 등의 시설물로부터 100미터 간격을 띄운 다음 폭 200미터 이내의 가상 항로를 따라 운항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정박지에 묘박한 선박을 주의하여 항행할 수 있도록 한다.

다. 5부두 물양장에 입항하고자 하는 선박은 기준점을 좌현에 멀리 두고 가능한 침로 305도로 운항하고, 출항하고자 하는 선박은 우현을 부두에서 100m 간격을 띄우고 가능한 침로 125도로 운항해야 한다.

라. 5부두 물양장과 제1항로 사이를 운항하는 선박은 제1항로 끝단(N 35-06-21.2 E 129-03-39.8, N 35-06-30.2 E 129-03-47.9)과 기준점을 가상으로 연결한 선의 오른쪽에서 가능한 침로를 000도, 180도로 운항할 수 있도록 한다.

마. 제4항로에서 제1항로로 운항하는 선박은 가능한 부산항대교 쪽으로 근접하여 운항할 수 있도록 한다.

바.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 전면 해역에서 무리한 횡단, 불필요한 행위 등은 피해야 하고, 야간에 운항할 경우 「해상교통안전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등화(燈火)를 표시해야 한다.

7. 감만부두 동측 안벽과 신선대 부두 사이를 출항하는 선박은 기준점 1(N 35-06.218, E 129-05.421)과 기준점 2(N 35-06.218, E 129-05.487)사이, 입항하는 선박은 기준점 2를 좌현에 두고 상대 변침각이 90도가 되도록 운항해야 한다.

**제9조(남향 항법)** 남향대교 하단 협소한 수로를 운항하는 모든 선박은 수로 중앙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운항해야 하며, 선박을 정지하거나 횡단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제10조(감천항 항법)** 감천항 제4부두와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을 출항하는 선박은 제4번 부표를 좌현에 두고 선회하여 주 항로의 출항 항로로 진입해야 하고, 감천항 제4부두와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으로 입항하는 선박은 제4번 부표 진입 전 타 선박의 입출항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제11조(다대포항 항법)** 다대포항을 입출항하는 모든 선박은 안개 등으로 시계(視界)가 제한될 경우 다른 선박 운항에 위험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안전한 속력으로 운항해야 한다.

**제12조(신항 항법)** ① 제5항로와 가덕수도를 이용하는 관제대상선박은 부산 신항해상교통관제센터의 선박교통관제에 따라야 한다.

② 가덕수도를 향해하는 선박은 지정된 항행 방향에 따라 항행해야 한다.

③ 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 범선,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가덕수도를 따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항행을 방해해서는 안되며, 가덕수도 바깥

해역을 이용하여 항행할 수 있다.

④ 가덕수도 출입구 부근에서 어로(漁撈)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가덕수도를 출입하려는 다른 선박의 항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 제4장 운항금지구역

**제13조(유선 운항금지구역)** ① 「선박입출항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로 정한 해역에서 유선사업자는 유선업을 목적으로 선박을 운항할 수 없다.

1. 조도 동측 끝단(N35-04-45.70, E129-05-44.74)과 신선대 측 방파제(N35-05-28.66, E129-06-34.13)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의 북측 해역 중 다음을 제외한 해역

가. 제1항로(다만, 제1항로를 횡단하는 경우 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 지시를 따라야 한다.)

나. 1지점(N 35-06-57.70, E 129-03-19.21)과 2지점(N 35-06-27.20, E 129-03-59.52)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의 남서측 해역

다. 제4항로와 제1항로를 입출항하는 경우만 허용한다.

2. 두도 최남단(N 35-02-49.40, E 129-00-56.40)과 영도 최남단(N 35-02-57.34, E 129-05-10.84)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의 북측 해역 중 다음을 제외한 해역

가. 1지점(N 35-03-10.71, E 129-00-54.74)과 2지점(N 35-04-33.90, E 129-01-29.62)을 연결한 해안선에서 정박지(N-2)를 침범하지 않는 구간까지의 해역

나. 영도 최남단(N 35-02-57.34, E 129-05-10.84)에서 부산 남향 항계 동측 지점(N 35-04-50.13, E 129-02-23.42)을 연결한 해안선에서 정박

지(N-1, N-3)를 침범하지 않는 구간까지의 해역(다만, 30톤 미만 유선에 한하여 운항할 수 있다.)

다. 제2항로

3. 감천항 서방과제와 동방과제를 연결하는 선의 북측 해역과 제3항로

4. 제5항로와 가덕수도

5. 영도대교와 부산대교 하단 해역

② 제1항에서 정한 해역 외에서 운항하고자 하는 유선사업자는 입·출항 또는 정박하고 있는 다른 선박 운항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마을어업권 설정 구역에서 주의를 하여 운항해야 한다.

③ 제1항에서 정한 유선 운항구역을 운항하는 유선은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레이더 등의 선박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30톤 미만의 유선에 한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만 설치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로 정한 유선 운항금지구역을 3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유선업을 목적으로 운항하고자 하는 유선사업자는 사전에 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신항 운항금지구역)** 「선박입출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우선피항

선을 제외한 모든 선박은 다음 각 호의 각 목 지점을 연결한 선의 안쪽 해역으로 진입해서는 안된다. 다만, 1천톤 이하 선박과 항만공사용 부선의 운항은 허용한다.

1. (삭제)

2. 잡화부두 예정지 동측 해역(아래 목을 연결한 선의 안쪽 해역)

가. 북위 35도 3분 54.7초, 동경 128도 46분 30초

나. 북위 35도 3분 52초, 동경 128도 46분 49초

다. 북위 35도 3분 31.2초, 동경 128도 46분 41.88초

라. 삭제

마. 삭제

바. 삭제

3. 신항 소형선부두 해역(아래 목을 연결한 선의 동측 해역)

가. 북위 35도 4분 54.78초, 동경 128도 46분 45초

나. 북위 35도 4분 52.3초, 동경 128도 46분 45.5초

다. 북위 35도 4분 39.07초, 동경 128도 46분 49초

라. 북위 35도 4분 39.07초, 동경 128도 46분 53초

**제15조(광안대교 인근 운항금지선)** ① 다음 각 호 지점을 연결한 선으로 총  
톤수 300톤 이상의 모든 선박은 진출입하거나 횡단을 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용호만 매립부두를 지정 계류지로 이용하는 선박과 군함, 경찰용 선  
박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선박은 운항을 허용한다.

1. 육지 끝단(북위 35도 08분 06.00초, 동경 129도 06분 44.00초)

2. 광안대로 남측 축도부 남단(북위 35도 08분 08.90초, 동경 129도 06분 5  
3.20초)

3. 북위 35도 08분 33.20초, 동경 129도 08분 51.60초

②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선박 외에 ‘광안대교 인근 운항금지선’을 운항하고  
자 하는 선박은 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6조(잔교 운항금지)** 모든 선박은 잔교 하부에 진입할 수 없다.

## 제5장 보칙

**제17조(속력 제한)** ① 「선박입출항법」 제17조제3항과 「해상교통안전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부산항을 운항하려는 모든 선박은 별표 5로 정한  
항행 최고 속력 범위 안에서 운항해야 한다. 다만, 부산항 북외항 구역에

지정한 속력은 권고사항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상황을 미리 통보하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이 고시 외에 별도로 속력 제한을 정한 경우 이를 따라야 한다.

1. 기상악화 등 긴급 피난선박
2. 인명구조 또는 해난구조에 종사하는 선박, 응급환자 후송 선박
3. 항로 횡단 선박(부산 신항 가덕수도 주의해역만 해당)
4. 군함(군사작전), 경찰용 선박, 단속·오염방제·항로표지관리 목적 관공선, 도선선
5. 그 밖의 긴급을 요하는 선박

**제18조(해양사고 조치)** ① 부산항에서 해양사고가 일어나 선박이 위험하거나 다른 선박 항행 안전이나 시설물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선박의 선장은 위험 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치를 취한 선장은 해양사고 발생과 조치 사실을 지체 없이 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해양경찰서나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19조(재검토기한)** 이 규칙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2026- 호, 2026.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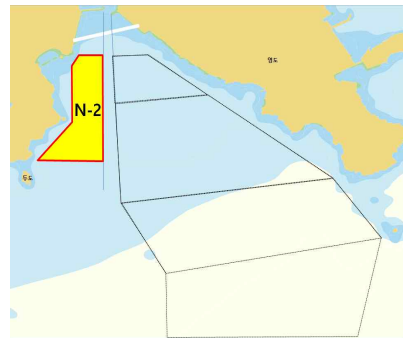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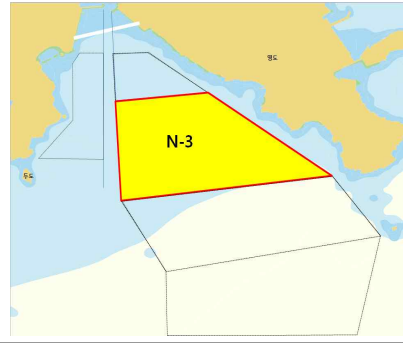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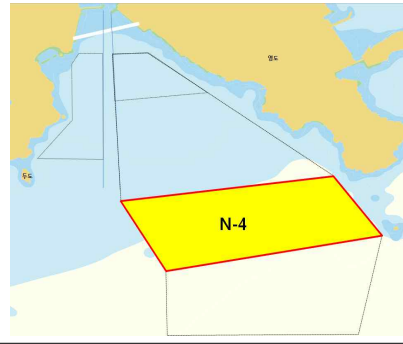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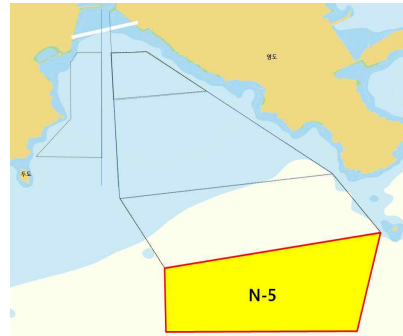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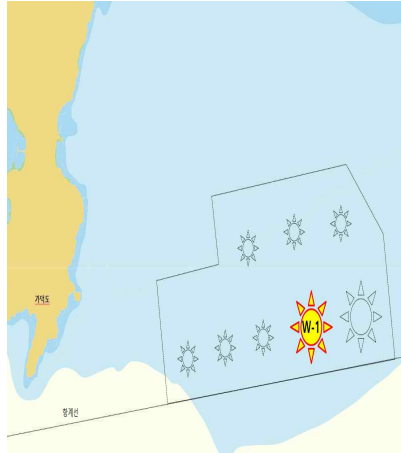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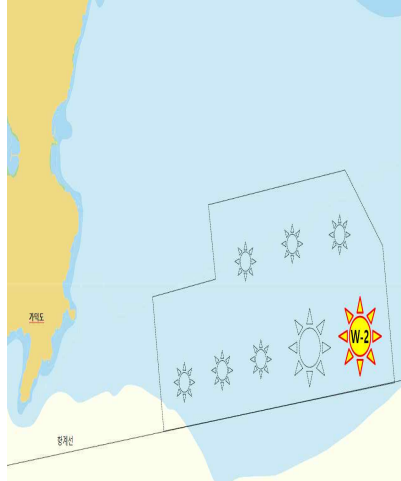
[별표 1] 정박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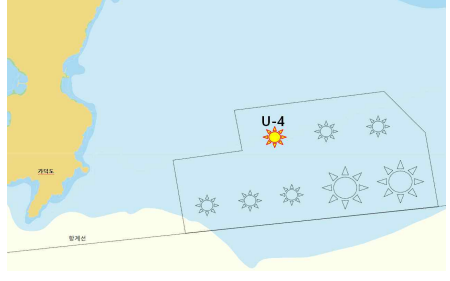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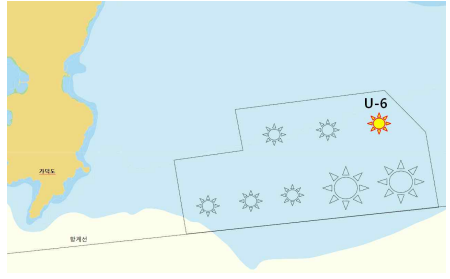
① 작업 및 대기

명칭	위치(경위도)	제한톤수(G/T), 척	정박지 위치도
삭제	삭제	삭제	
E-2	N 35-06-22.4, E 129-03-12.9	10,000이하, 1	
O-2	다음 각 호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의 안쪽 해면 1. N 35-05-46, E 129-04-06 2. N 35-06-00, E 129-04-17 3. N 35-05-22, E 129-04-30 4. N 35-05-40, E 129-04-50	3,000미만, 4	
M-7	N 35-05-21.1, E 129-04-55.9	10,000미만, 1	
M-8	N 35-05-14.1, E 129-05-11.9	10,000이상, 1	
M-9	N 35-05-02.1, E 129-05-27.9	''	
수영만 (S-1)	N 35-08-51.1 E 129-08-26.8	10,000이하, 1 (반경200m)	

② 작업 및 대기(집단 정박지)

명칭	위 치(경위도)	시설능력(G/T), 척	정박지 위치도
N-1 (남외항 1)	다음 각 호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의 안쪽 해면 1. N 35-04-35.1, E 129-02-00.0 2. N 35-04-35.1, E 129-02-21.5 3. N 35-04-01.7, E 129-03-11.1 4. N 35-04-01.7, E 129-02-03.9	1,000이하, 8	
N-2 (남외항 2)	다음 각 호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의 안쪽 해면 1. N 35-04-35.2, E 129-01-35.5 2. N 35-04-35.2, E 129-01-53.4 3. N 35-03-10.8, E 129-01-52.4 4. N 35-03-10.6, E 129-01-02.2 5. N 35-03-41.3, E 129-01-29.7 6. N 35-04-26.9, E 129-01-29.7	1,000초과 3,000이하, 7척	
N-3 (남외항 3)	다음 각 호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의 안쪽 해면 1. N 35-04-01.7, E 129-02-03.9 2. N 35-04-01.7, E 129-03-11.1 3. N 35-02-55.9, E 129-04-48.2 4. N 35-02-39.5, E 129-02-13.5	3,000초과 10,000이하, 18척	
N-4 (남외항 4)	다음 각 호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의 안쪽 해면 1. N 35-02-39.5, E 129-02-13.5 2. N 35-02-55.9, E 129-04-48.2 3. N 35-02-09.6, E 129-05-23.7 4. N 35-01-36.7, E 129-02-38.1	10,000초과 30,000이하, 8척	
N-5 (남외항 5) 부산항 항계 외곽해면	다음 각 호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의 안쪽 해면 1. N 35-01-36.7, E 129-02-38.1 2. N 35-02-09.6, E 129-05-23.7 3. N 35-00-11.3, E 129-04-48.1 4. N 35-00-11.5, E 129-02-38.1	30,000초과, 7	

명칭	위치(경위도)	제한톤수(G/T), 척	정박지 위치도
<p>전체 구역 (신항)</p>	<p>다음 각 호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의 안쪽 해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N 35-01-13.1, E 128-54-21.8</li> <li>2. N 35-00-38.0, E 128-55-07.0</li> <li>3. N 35-00-08.5, E 128-55-14.5</li> <li>4. N 34-59-24.1, E 128-51-31.6</li> <li>5. N 35-00-10.4, E 128-51-18.9</li> <li>6. N 35-00-22.1, E 128-52-28.5</li> <li>7. N 35-00-52.6, E 128-52-20.9</li> </ol>		
W-1	N 35-00-21.0, E 128-53-45.0	80,000이하, 1	
W-2	N 35-00-25.0, E 128-54-40.0	250,000이하, 1 *흘수 18m이하	

U-1	N 35-00-00.0, E 128-51-44.2	30,000이하, 1	
U-2	N 35-00-06.5, E 128-52-22.0	30,000이하, 1	
U-3	N 35-00-14.0, E 128-53-01.5	30,000이하, 1	
U-4	N 35-00-42.0, E 128-52-50.5	30,000이하, 1	
U-5	N 35-00-49.0, E 128-53-30.5	30,000이하, 1	
U-6	N 35-00-54.0, E 128-54-10.0	30,000이하,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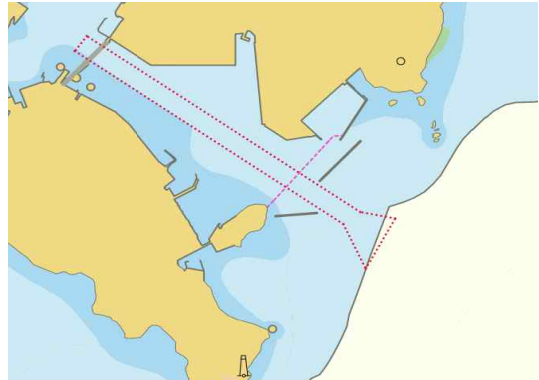



\* 지정된 모든 정박지에 투묘하는 선박의 척수는 기상상황·선박크기·수심·안전거리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다.




\*\* 해양사고 등을 피하거나 선박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선박을 조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한 톤수와 척수를 초과하여 지정할 수 있다.

[별표 2] 정박금지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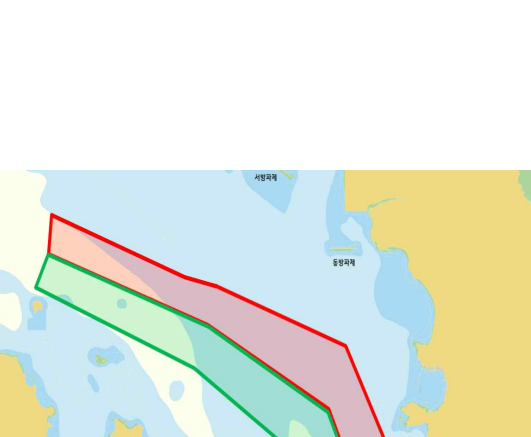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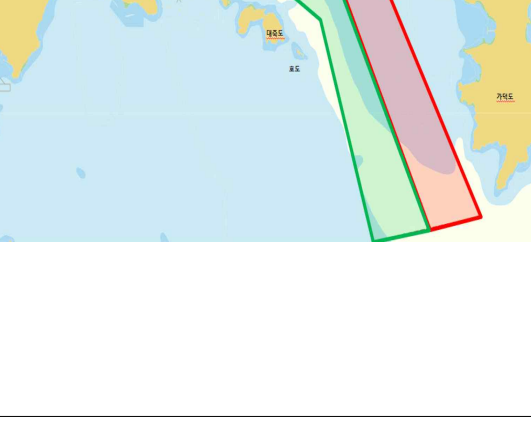

구역	위치	정박금지 구역도
<p>남외항 및 감천항 입출항 구역</p>	<p>다음 각 호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의 안쪽 해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N 35-02-42.0 E 129-01-52.0</li> <li>2. N 35-02-39.5 E 129-02-13.5</li> <li>3. N 35-01-40.2 E 129-02-36.9</li> <li>4. N 35-01-25.8 E 129-01-21.0</li> </ol>	

[별표 3] 항로

항로별	항로구역	항로구역도
제1항로	다음 각 호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의 안쪽 해면 1. N 35-06-21.2 E 129-03-39.8 2. N 35-04-38.6 E 129-06-35.9 3. N 35-04-12.2 E 129-06-50.8 4. N 35-04-42.1 E 129-07-09.8 5. N 35-04-45.8 E 129-06-46.9 6. N 35-06-30.2 E 129-03-47.9	
제2항로	다음 각 호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의 안쪽 해면 1. N 35-05-05.5 E 129-01-58.0 2. N 35-04-49.6 E 129-01-58.2 3. N 35-02-39.5 E 129-02-13.5 4. N 35-02-42.0 E 129-01-52.0 5. N 35-04-47.7 E 129-01-53.6 6. N 35-05-09.8 E 129-01-52.7	
제3항로	다음 각 호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의 안쪽 해면(전체항로) 1. N 35-04-11.2 E 128-59-59.7 2. N 35-03-28.2 E 129-00-01.9 3. N 35-03-10.1 E 129-00-11.5 4. N 35-02-57.5 E 129-00-25.7 5. N 35-02-44.7 E 129-00-36.9 6. N 35-02-48.3 E 129-00-54.7 7. N 35-03-03.2 E 129-00-30.6 8. N 35-03-30.6 E 129-00-16.8 9. N 35-04-11.2 E 129-00-09.4	
제3항로	(입항항로) 1. E 35-02-48.3 E 129-00-54.7 2. E 35-02-15.9 E 129-01-41.3 3. E 35-01-54.2 E 129-01-32.5 4. E 35-02-27.0 E 129-01-00.0  (출항항로) 1. N 35-02-27.0 E 129-01-00.0 2. N 35-01-21.7 E 129-01-22.4 3. N 35-01-16.6 E 129-00-56.6 4. N 35-02-44.7 E 129-00-36.9 5. 삭제	

항로별	항로구역	항로구역도
제3항로	<p>(분리대: 붉은색 삼각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N 35-02-27.0 E 129-01-00.0</li> <li>2. N 35-01-54.0 E 129-01-32.7</li> <li>3. N 35-01-25.8 E 129-01-21.0</li> </ol>	
제4항로	<p>다음 각 호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의 안쪽 해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N 35-05-57.7 E 129-02-31.9</li> <li>2. N 35-05-47.8 E 129-02-19.7</li> <li>3. N 35-05-46.1 E 129-02-20.7</li> <li>4. N 35-05-56.4 E 129-02-33.4</li> </ol>	
제5항로	<p>다음 각 호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의 안쪽 해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N 35-02-27.0 E 128-46-14.3</li> <li>2. N 35-03-30.6 E 128-46-46.9</li> <li>3. N 35-03-52.0 E 128-46-49.0</li> <li>4. N 35-03-51.18 E 128-47-27.24</li> <li>5. N 35-03-16.92 E 128-47-10.69</li> <li>6. N 35-02-44.47 E 128-47-10.78</li> <li>7. N 35-02-03.12 E 128-47-32.33</li> </ol>	

[별표 4] 가덕수도(입출항항로)

항로별	항로구역	항로구역도
<p>중앙 분리선 (붉은 선)</p>	<p>다음 각 호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1. N 35-02-50.5 E 128-43-14.4 2. N 35-02-9.3 E 128-45-28.7</p> <p>다음 각 호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1. N 35-01-26.4 E 128-47-18.8 2. N 34-58-31.8 E 128-48-33.7</p>	
<p>입항항로 (적색)</p>	<p>다음 각 호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의안쪽 해면 1. N 34-58-41.5 E 128-49-19.5 2. N 35-02-01.4 E 128-47-37.8 2-1 N 35-02-37.47 E 128-45-40.40 2-2 N 35-02-43.39 E 128-45-9.84 3. N 35-03-16.31 E 128-43-22.62 4. N 35-02-50.5 E 128-43-14.4 5. N 35-02-9.3 E 128-45-28.7 6. N 35-01-26.4 E 128-47-18.8 7. N 34-58-31.8 E 128-48-33.7</p>	
<p>출항항로 (녹색)</p>	<p>다음 각 호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의 안쪽 해면 1. N 34-58-21.4 E 128-47-46.1 2. N 35-00-52.9 E 128-47-01.0 3. N 35-01-46.6 E 128-45-19.3 4. N 35-02-28.5 E 128-42-59.9 5. N 35-02-50.5 E 128-43-14.4 6. N 35-02-9.3 E 128-45-28.7 7. N 35-01-26.4 E 128-47-18.8 8. N 34-58-31.8 E 128-48-33.7</p>	
<p>주의해역 (노랑색)</p>	<p>다음 각 호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의 안쪽 해면 1. N 35-01-07.2, E 128-48-05.4 2. N 35-02-01.2, E 128-47-37.5 3. N 35-02-37.0, E 128-45-42.3 4. N 35-01-47.4, E 128-45-18.7 5. N 35-00-53.0, E 128-47-01.3 6. N 35-00-23.2, E 128-47-10.2</p> <p>※ 특정조건: ‘선박이 밀집되거나 교차 항해의 우려가 있는 해역’ 으로 별표5에서 정한 항행 최고속력의 범위 안에서 항행하여야 함</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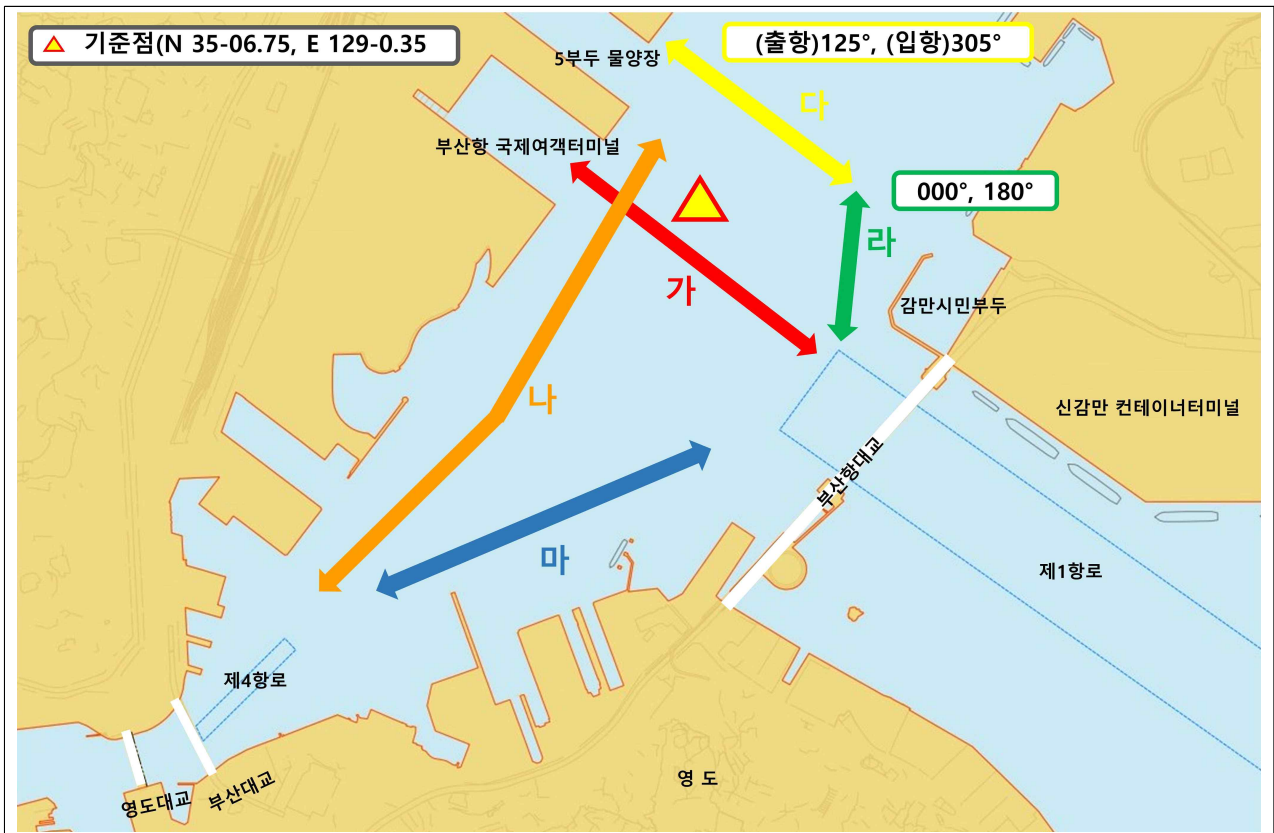
[별표 5] 항행 최고 속도

구역	위치도	대상 선박	항행 최고 속도 (대지속력)
1. 북내항: 두 지점(N 35-06-13.26, E 129-03-48.63와 N 35-06-26.09, E 129-04-1.01)을 연결한 선과 영도대교 사이 해면		총톤수 500톤 미만 여객선	12노트 이하
		기타 모든 선박	8노트 이하
2. 북외항: 두 지점(N 35-06-13.26, E 129-03-48.63와 N 35-06-26.09, E 129-04-1.01)을 연결한 선과 두 지점(N 35-05-22.4, E 129-04-30.2와 N 35-06-13.4, E 129-04-30.2)을 연결한 선의 안쪽 해면		1,000톤 이상 선박	8노트 이하
3. 오륙도방파제와 조도방파제 인근 좁은 수로		모든 선박	8노트 이하
4. 감천항: 동·서 방파제 안쪽 해면		모든 선박	10노트 이하
5. 다대포항: 해경 정비창 방파제와 낮개 방파제를 직선으로 연결한 선과 다대포 국가어항 경계선 사이의 해면		모든 선박	7노트 이하

<p>6. 신항 내항: 출항항로 끝단 (N 35-03-52, E 128-46-49)과 호남도 북서 끝단 (N 35-03-51.19, E 128-47-27.2)을 연결한 선의 북측 해면</p>		<p>모든 선박</p>	<p>12노트 이하</p>
<p>7. 가덕수도(입출항항로) 주의해역</p>		<p>모든 선박</p>	<p>12노트 이하</p>

[별표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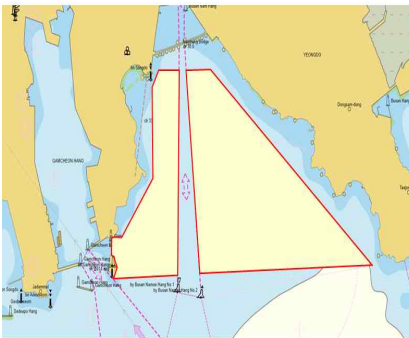


①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전면 해역 운항 항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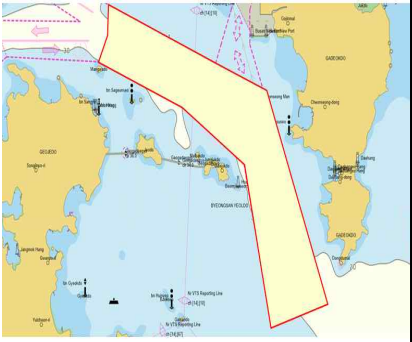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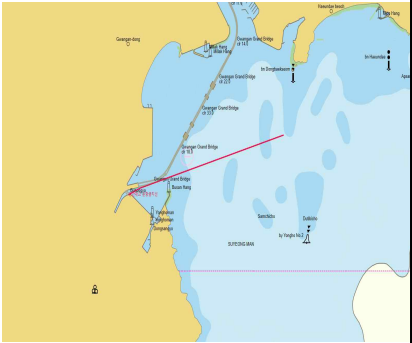


② 감만부두 동측안벽 통항



[별표 7] 운항금지구역

금지 구역명	금지 구역	금지 구역도[  ]
<p>유선 운항금지구역 (부산항)</p>	<p>N 35-04-45.7 E 129-05-44.74 / N 35-05-28.66 E 129-06-34.13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의 북측해역 중 다음을 제외한 해역                      가. 제1항로(다만, 제1항로를 횡단하는 경우 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 지시를 따라야 한다.                      나. 1지점(N 35-06-57.7 E 129-03-19.21)과 2지점(N 35-06-27.2 E 129-03-59.52)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의 남서측 해역                      다. 제4항로와 제1항로를 입출항하는 경우만 허용한다.</p>	
<p>유선 운항금지구역 (남외항)</p>	<p>N 35-02-49.4 E 129-00-56.4 / N 35-02-57.34 E 129-05-10.84를 직선으로 연결한 지점의 북측해역 중 다음을 제외한 해역                      가. 1지점(N 35-03-10.71 E 129-00-54.74)과 2지점(N 35-04-33.9 E 129-01-29.62)을 연결한 해안선에서 정박지(N-2)를 침범하지 않는 구간까지의 해역                      나. 영도최남단(N 35-2-57.34 E 129-5-10.84)에서 남향항계동측(N 35-4-50.13 E 129-2-23.42)을 연결한 해안선에서 정박지(N-1, N-3)를 침범하지 않는 구간까지의 해역(다만, 30톤 미만 유선에 한하여 운항할 수 있다.)                      다. 제2항로</p>	
<p>유선 운항금지구역 (감천항)</p>	<p>감천항 서방과제와 동방과제를 연결하는 선의 북측 해역과 제3항로</p>	
<p>유선 운항금지구역 (신항5항로)</p>	<p>다음 각 호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의 안쪽 해면                      1. N 35-02-27.0 E 128-46-14.3                      2. N 35-03-30.6 E 128-46-46.9                      3. N 35-03-52.0 E 128-46-49.0                      4. N 35-03-51.18 E 128-47-27.24                      5. N 35-03-16.92 E 128-47-10.69                      6. N 35-02-44.47 E 128-47-10.78                      7. N 35-02-03.12 E 128-47-32.33</p>	

<p>유선 운항금지구역 (가덕수도)</p>	<p>[별표4] 가덕수도(입출항항로) 참조</p>	
<p>신항 운항금지구역 (1천톤이하 선박 및 공사용 부선은 가능)</p>	<p>2. 잡화부두 예정지 동측 해역(아래 목을 연결한 선의 안쪽) 가. N 35-03-54.7 E 128-46-30 나. N 35-03-52.0 E 128-46-49 다. N 35-03-31.2 E 128-46-41.88 3. 신항 소형선부두 해역(아래 목을 연결한 선의 동측) 가. N 35-04-54.78 E 128-46-45.0 나. N 35-04-52.30 E 128-46-45.5 다. N 35-04-39.07 E 128-46-49.0 라. N 35-04-39.07 E 128-46-53.0</p>	
<p>광안대교 운항금지선</p>	<p>① 다음 각 호 지점을 연결한 선으로 300톤 이상 모든 선박은 진출입·횡단 금지, 다만 용호만 매립부두를 지정 계류지로 이용하는 선박과 군함, 경찰용 선박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선박은 운항 허용 1. 육지 끝단 N 35-08-06.0 E 129-06-44 2. 광안대로 남측 축도부 남단 N 35-08-08.9 E 129-06-53.2 3. N 35-08-33.2, E 129-08-51.6 ② 제1항 단서에 정한 선박 외에 ‘광안대교 운항금지선’을 운항하고자 하는 선박은 청장 허가를 받아야 함</p>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북항 항법) 북항을 입출항하는 모든 선박은 다음 항법에 따라 운항해야 한다.</p> <p>1. ~ 5. (생략)</p> <p>6.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전면 해역을 운항하는 모든 선박은 가능하면 기준점(N 35-06.75, E 129-03.5)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운항할 수 있도록 한다(별표 6 참조). 다만, 가목 이외에는 권고사항으로 한다.</p> <p>가. (생략)</p> <p>나. 5부두 물양장과 제4항로를 운항하고자 하는 선박은 가능한 <u>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부두 끝단과 평행하게 100m</u> 간격을 띄운 다음 폭 <u>200m</u> 이내의 가상항로를 따라 운항할 수 있도록 한다. &lt;후단 신설&gt;</p> <p>다. ~ 바. (생략)</p> <p>7. (생략)</p> <p>제13조(유선 운항금지구역) ① 「선박입출항법」 제9조제1항</p>	<p>제8조(북항 항법)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 ----- ----- ----- -----.</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 ----- 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부두, 방파제, 연안여객부두 등의 시설물로부터 <u>100미터</u> ----- ----- <u>200미터</u> ----- ----- . 이때, 정박지에 <u>묘박한 선박을 주의하여 항행할 수 있도록 한다.</u></p> <p>다. ~ 바. (현행과 같음)</p> <p>7. (현행과 같음)</p> <p>제13조(유선 운항금지구역) ① -- -----</p>

에 따라 다음 각 호로 정한 해역에서 유선사업자는 유선업을 목적으로 선박을 운항할 수 없다.

1. 조도 동측 끝단(N35-04-45.70, E129-05-44.74)과 신선대측 방파제(N35-05-28.66, E129-06-34.13)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의 북측 해역 중 다음을 제외한 해역

가. (생략)

나. 1지점(N 35-06-57.70, E 129-03-19.21)과 2지점(N 35-06-27.20, E 12903-59.52)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의 남서측 해역

다. (생략)

2. ~ 5. (생략)

② ~ ④ (생략)

제19조(재검토기한) 이 규칙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  
-----  
--.

1. -----  
-----  
-----  
-----  
-----

가. (현행과 같음)

나. -----  
-----  
----- 129-03-59.  
52)-----  
-----

다. (현행과 같음)

2.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재검토기한) -----  
-----  
----- 2026  
년 1월 1일-----  
-----  
-----  
-----.

[별표 1] 정박지

① 작업 및 대기

명칭	위치(경위도)	제한톤수(G/T), 척	정박지 위치도
E-1	N 35-06-11.1, E 129-02-58.9	5,000이하, 1	
E-2	N 35-06-22.1, E 129-03-10.9	10,000이상, 1	
O-2	다음 각 호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의 안쪽 해면 1. N 35-06-46, E 129-04-06 2. N 35-06-00, E 129-04-17 3. N 35-06-22, E 129-04-30 4. N 35-06-40, E 129-04-50	3,000미만, 4	
M-7	N 35-06-21.1, E 129-04-55.9	10,000미만, 1	
M-8	N 35-06-14.1, E 129-05-11.9	10,000이상, 1	
M-9	N 35-06-02.1, E 129-05-27.9		
수령면 (S-1)	N 35-08-51.1 E 129-08-26.8	10,000이하, 1 (반경200m)	

[별표 1] 정박지

① 작업 및 대기

명칭	위치(경위도)	제한톤수(G/T), 척	정박지 위치도
삭제	삭제	삭제	
E-2	N 35-06-22.4, E 129-03-12.9	10,000이하, 1	
O-2	다음 각 호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의 안쪽 해면 1. N 35-06-46, E 129-04-06 2. N 35-06-00, E 129-04-17 3. N 35-06-22, E 129-04-30 4. N 35-06-40, E 129-04-50	3,000미만, 4	
M-7	N 35-06-21.1, E 129-04-55.9	10,000미만, 1	
M-8	N 35-06-14.1, E 129-05-11.9	10,000이상, 1	
M-9	N 35-06-02.1, E 129-05-27.9		
수령면 (S-1)	N 35-08-51.1 E 129-08-26.8	10,000이하, 1 (반경200m)	

[별표 6]

①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전면 해역 운항 방법



② 감만부두 동측안벽 통항



[별표 6]

①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전면 해역 운항 방법



② 감만부두 동측안벽 통항

